

## 9. 제도성 특별약관

### 9-1.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 ①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갱신형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전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후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 보험기간 예시 >

50세의 피보험자가 3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 : 53세, 56세, … , 95세, 98세

⇒ 98세 갱신시점에서는 10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작아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제3조(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방법)

- ① 계약자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부족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부족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예시 〉

(단위 : 원)

구 분	...	40세	...	43세	...	46세	...	49세	...
최초가입 시 보험료	...	4,000	...	5,000	...	6,000	...	7,000	...
첫번째 갱신시점의 보험료	...	4,400	...	5,500	...	6,600	...	7,700	...
두번째 갱신시점의 보험료	...	5,100	...	6,300	...	7,600	...	8,900	...

주) 1. 보험료는 일정주기별로(예 : 매년) 재산출됩니다.

2. 상기 갱신보험료는 실제 보험료가 아닌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 보험료입니다.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 최초가입 시 납입할 특약보험료는 가입 시점의 40세 보험료인 4,000원입니다.

⇒ 첫번째 도래하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특약보험료는 갱신시점의 43세 보험료인 5,500원입니다.

⇒ 두번째 도래하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특약보험료는 갱신시점의 46세 보험료인 7,600원입니다.

※ 상기 예시와 같이 갱신 시 보험료에는 피보험자의 나이증가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변동분이 함께 반영이 됩니다.

### 제4조(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제2조(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약관은 가입 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갱신 후 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개정으로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변경내용,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전계약은 만료됩니다.
- ⑤ 갱신전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제4항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갱신후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